

# 무배당 우리가족암보험 2109(일반형,1종)(갱신형) 상품요약서

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리가족암보험 2109(일반형, 1종)(갱신형)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◆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

### ① 상품의 특이사항

Q : 무배당 우리가족암보험 2109(일반형, 1종)(갱신형)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?

A : 무배당 우리가족암보험 2109(일반형, 1종)(갱신형)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저렴한 보험료로 일반암 진단시 최대 3,000만 원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고액암(백혈병, 뇌종양, 골종양, 췌장암, 식도암 등) 진단시 최대 6,000만 원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소액암(갑상선암, 기타피부암, 대장점막내암, 제자리암, 경계성 종양) 진단시 최대 1,000만 원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한번 가입으로 평생토록 든든하게 보장하여 드립니다. (10년 만기 종신갱신형)

- 10년 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(주계약 1구좌 기준)
- 보험료 할인
 

피보험자가 B형 간염 항체 보유시 항체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신관서가 확인시에는 서류제출시점 이후의 차회보험료부터 영업보험료(갱신계약 영업보험료 포함)의 3%를 할인하여 영수합니다. 다만, 제1회 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됩니다.

## ② 보험가입 자격요건

### ■ 보험기간, 가입나이,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

#### ○ 주계약

| 구분   | 가입나이   | 보험기간              | 보험료<br>납입기간 | 보험료<br>납입주기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최초계약 | 0~65세  | 10년 만기<br>(종신갱신형) | 전기납         | 월납          |
| 갱신계약 | 10세 이상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
#### ○ 특약

-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 1종(갱신형), 무배당 이차암보장특약 2109 1종(갱신형),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 1종(갱신형)

| 구분   | 가입나이   | 보험기간              | 보험료<br>납입기간 | 보험료<br>납입주기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최초계약 | 0~65세  | 10년 만기<br>(종신갱신형) | 전기납         | 월납          |
| 갱신계약 | 10세 이상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
■ 가입한도

|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계약    |   | 0.5구좌 ~ 1구좌<br>(0.5구좌 단위) |
| 특<br>약 | (무)이차암보장특약 2109 1종(갱신형)<br>(무)암진단생활비특약 2109 1종(갱신형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(무)소액암진단특약 2109 1종(갱신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1구좌 ~ 1구좌<br>(0.1구좌 단위) |

주) 특약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(구좌수) 이내에서 가입 가능

■ 건강진단 여부 : 전진 무진단

■ 계약의 갱신

|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|---|
| 갱신절차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(음성녹음) 안내 (보험료 등 변경내용)<br/>→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<br/>→ 계약자가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종료</li> <li>※ 주계약의 경우,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※ (무)소액암진단특약 2109 1종(갱신형)의 경우,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약을 갱신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※ (무)이차암보장특약 2109 1종(갱신형)의 경우,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,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피보험자 종신까지로 합니다.</li> <li>※ (무)암진단생활비특약 2109 1종(갱신형)의 경우,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갱신하지 않습니다.</li> </ul> |
| 갱신계약<br>보험료 | -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, 적용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음   |

## ◆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

### ① 상품의 구성

|     |   |
|-----|---|
| 주계약 | +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 1종(갱신형)(의무부가)<br>+ 무배당 이차암보장특약 2109 1종(갱신형)(선택)<br>+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 1종(갱신형)(선택)<br>+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(선택)<br>+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(선택) |
|-----|---|

### ② 보험금 지급사유

아래 내용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■ 주계약

(보험가입금액(구좌수) 1구좌 기준)

| 지급구분       | 지급사유  | 지급액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|   | 구분            | 고액암      | 일반암      |
| 암진단<br>보험금 |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(단, 최초 1회에 한함) | 경과기간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|   |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| 3,000만 원 | 1,500만 원 |
|            |   |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| 6,000만 원 | 3,000만 원 |
| 건강<br>관리자금 |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만 원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
- 주) 1.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2.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3.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,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

일로 합니다. 단, 계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
4.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[부활(효력회복)일]로 합니다.
5.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,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6. 고액암은 백혈병, 뇌종양, 골종양, 췌장암, 식도암 등입니다.
7. “갑상선암”, “기타피부암” 및 “대장점막내암” 은 “암”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8. 갱신계약의 경우,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■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 1종(갱신형)

(특약보험가입금액(구좌수) 1구좌 기준)

| 지급구분         | 지급 사유  | 지급액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소액암<br>진단보험금 |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, 기타 피부암, 대장점막내암,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(단, 각각 최초 1회에 한함) | 보험계약일부터<br>1년 미만 | 500만 원   |
|              |  | 보험계약일부터<br>1년 이상 | 1,000만 원 |

- 주) 1.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2.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3. 갱신계약의 경우, 갑상선암, 기타피부암, 대장점막내암,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소액암진단

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,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, 기타피부암, 대장점막내암,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(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)가 있는 경우 체신권서는 해당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4. 갱신계약의 경우,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■ 무배당 이차암보장특약 2109 1종(갱신형)

(특약보험가입금액(구좌수) 1구좌 기준)

| 지급구분         | 지 급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 급 액   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이차암<br>진단보험금 |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(단, 최초 1회에 한함) | 3,000만 원 |
| 건강관리자금       | 보함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만 원    |

- 주) 1. 피보험자에게 「이차암진단보험금」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2.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  3.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피보험자 종신까지로 하며, 피보험자 종신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. 단, 암 진단 확정일 이후의 건강관리자금은 피보험자 종신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4. 이차암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.
  5. 첫 번째 암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,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. 단, 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

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
6.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[부활(효력회복)일]로 합니다.
7.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,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8. “갑상선암”, “기타피부암” 및 “대장점막내암”은 “암”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이차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9. 이차암의 진단 확정은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새로운 암(원발암)으로 진단 확정 또는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전이된 암(전이암)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.

■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 1종(갱신형)

(특약보험가입금액(구좌수) 1구좌 기준)

| 지급구분     | 지 급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 급 액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암진단 생활자금 |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(단, 최초 1회에 한함) | 보험계약일부부터 1년 미만 | 매월 25만 원 (60회 확정) |
|          |   | 보험계약일부부터 1년 이상 | 매월 50만 원 (60회 확정) |
| 건강관리자금   |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만 원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- 주) 1.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2.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3.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,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. 단, 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에는 부활(효력회복)일부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
4.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[부활(효력회복)일]로 합니다.
5.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,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6. 암진단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5년(60회)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.
7. “갑상선암”, “기타피부암” 및 “대장점막내암”은 “암”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8. 갱신계약의 경우,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■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

|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|--|
| 대상계약         | 계약자, 피보험자 및 수익자(사망시 수익자 제외)가 모두 동일한 계약   |
|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 |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 |
| 지정대리 청구인     |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  |
|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</li> <li>-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고 수령</li> <li>-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,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</li> </ul> |

■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

|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|--|
| 대상계약          | -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 |
|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자가 증빙서류(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서,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)를 제출하고, 특약 가입 신청</li> <li>-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</li> </ul> |

### 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

#### ■ 고지의무(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)

-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, 현재의 건강상태,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
-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#### ■ 계약의 무효

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
-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(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·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)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. 다만,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.
- 만 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. 다만,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

계약이 유효합니다.

-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. 다만,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,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
#### ■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

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,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.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.

#### 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
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.

-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
-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
#### ■ 계약의 효력

-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
-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.

-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(효력회복)
  -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.
  -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.
  -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.

■ 보험금 등의 청구

-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.
-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| 구비서류<br>지급사유   | 신분증 | 도장 | 해 당<br>진단서 | 비 고  |
|--|-----|----|------------|--|
| 만 기 시  | ○   | ○  |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사망시는 사망진단서,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</li> <li>▪ 암 진단 확정시는 암진단서</li> </ul> |
| 사 망 시  | ○   | ○  | ○          |  |
| 암 진 단 시  | ○   | ○  | ○          |  |
| 해 약 시  | ○   | ○  |            |  |
| 환급금대출시   | ○   | ○  |            |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(보험수익자)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용도 :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)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▪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|     |    |            |  |

## ◆ 보험료 산출기초

### ① 예정이율

Q :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?

A :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, 이 할인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,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. 무배당 우리가족암보험 2109(일반형,1종)(갱신형)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1.75%입니다.

### ② 예정위험률

Q :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?

A :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,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.

| 구분         |    | 20세      | 40세      | 60세      |
|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암 발생률      | 남자 | 0.000358 | 0.002313 | 0.012722 |
|            | 여자 | 0.000514 | 0.005265 | 0.008518 |
| 기타피부암 발생률  | 남자 | 0.000005 | 0.000035 | 0.000202 |
|            | 여자 | 0.000008 | 0.000028 | 0.000141 |
| 갑상선암 발생률   | 남자 | 0.000049 | 0.000606 | 0.000448 |
|            | 여자 | 0.000254 | 0.002030 | 0.001618 |
| 대장점막내암 발생률 | 남자 | 0.000000 | 0.000008 | 0.000056 |
|            | 여자 | 0.000000 | 0.000005 | 0.000022 |
| 고액암 발생률    | 남자 | 0.000170 | 0.000292 | 0.001312 |
|            | 여자 | 0.000103 | 0.000212 | 0.000696 |
| 제자리암 발생률   | 남자 | 0.000005 | 0.000116 | 0.000770 |
|            | 여자 | 0.000127 | 0.001542 | 0.001064 |
| 경계성종양 발생률  | 남자 | 0.000068 | 0.000236 | 0.000351 |
|            | 여자 | 0.000089 | 0.000350 | 0.000299 |

### ◆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

무배당 우리가족암보험 2109(일반형,1종)(갱신형)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.

### ◆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

####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

Q :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,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?

A : 우체국보험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.

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,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#### ② 해약환급금 예시

(기준: 주계약 보험가입금액(구좌수) 1구좌 40세, 10년 만기, 전가납, 단위: 원)

| 경과기간 | 남자        |           | 여자  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| 납입보험료     | 해약환급금     | 납입보험료     | 해약환급금     |
| 1년   | 234,000   | 22,000    | 283,200   | 44,600    |
| 3년   | 702,000   | 317,300   | 849,600   | 337,800   |
| 5년   | 1,170,000 | 597,200   | 1,416,000 | 604,300   |
| 7년   | 1,638,000 | 789,800   | 1,982,400 | 776,600   |
| 10년  | 2,340,000 | 1,000,000 | 2,832,000 | 1,000,000 |

주) 위 예시된 해약환급금에는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